

#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96,837,237	29,905,117
일반회계	803,482,031	24,104,461
특별회계	193,355,206	5,800,656
공기업특별회계	62,875,931	1,886,27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1,383,557	641,50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1,492,374	1,244,771
기타특별회계	130,479,275	3,914,37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483,834	494,515
주택사업특별회계	3,230,329	96,910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4,323,375	129,70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200,000	36,000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119,906	3,597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601,083	48,032
교통사업특별회계	8,934,188	268,026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77,919,340	2,337,58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6,667,220	500,017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977,10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5,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